

시민권 논의에 대한 비교 연구 - T.H.Marshall의 시민권, 경제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 여성의 시민권을 중심으로

이 정 남 (한림대학교 대학원)

T.H.Marshall은 Citizenship and Social Class(1949)에서 자본주의 사회에 내재된 불평등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평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으로 시민권을 논의하고 있다. T.H.Marshall의 시민권 논의는 완전고용과 케인즈주의의 실현이라는 경제적 상황에서 영국의 복지국가가 확장되고 있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20세기 후반기에 복지국가 확장은 논쟁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의 문제와 관련된 사회적 정의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고전적인 시민권의 개념에서 틀을 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T.H.Marshall의 시민권을 비롯하여, 1990년대 이후의 주요한 시민권 논의들인, Offe의 경제적 시민권(economic citizenship), Handler의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과 노동연계복지, 그리고 1990년대의 여성 시민권 등을 비교하여, 시민권의 변화와 특징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비교를 위해, 논의가 전개된 경제적 사회적 상황들, 시민권의 개념과 주요 주장들, 제시된 주요 사회복지제도나 그 외 제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T.H.Marshall은 시민권의 개념을 A.Marshall(1842-1924)을 통해 유추하고 있다. A.Marshall(1873)에 의하면, 노동계급은 직업을 통한 물질적 풍요로움과 교육, 자기 존중감의 향상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젠틀맨(기존의 젠틀맨은 타고난 상위계층의 신분) 즉, '시민civilized man'이 될 수 있다. 즉 그의 세대에 젠틀맨에게 적절한 것으로 간주된 조건들을 취하고 사회적 유산을 공유하며, 시민으로서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T.H.Marshall은 이러한 개념을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라는 개념에 연결하여 기본적인 인간평등이 있으며, 이것이 시민권citizenship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사회 계층 체제의 불평등은 만약 시민권의 평등이 인정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T.H.Marshall은 계급 간의 물질적 격차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으며, 사회적 불평등을 수용하고 사회권social right의 확대로 불평등이 경제적으로 덜 기능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현물로 급여를 주는 건강서비스, 교육 지원, 월세규제, 공공요금 규제 등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 실질소득을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0세기말에 Offe(1997)는 경제적 부분으로 시민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Offe는 생산과 분배를 지배하는 사회적 질서가 실업으로 인해 위태로워지며 발생하는 불안정성(사회질서의 초석으로서 노동계약의 실패와 완전고용체계의 실패로 인해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제적 시민권economic citizenship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의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기초소득basic income을 경제적 시민권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소득이전이 개별적 고용조건(육구, 현재의 고용, 근로의욕이나 능력)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개인의 시민권 지위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이다. Offe는 모든 시민들이 시민권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경제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분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Handler(2004)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있으며, 근로연계복지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의 회복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Handler는 근로연계복지가 의무를 통한 통합inclusion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필연적으로 배제exclusion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고 논의한다. 근로연계복지는 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어떤 사회에서건 그러한 계약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Handler는 국가와 개인의 계약관계라 할 수 있는 근로연계복지의 발달로 시민권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시민권Social Citizenship이 지위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논의한다. 이를 위해 Handler는 Offe와 같이 기초소득 보장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외에 사회적 서비스가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개선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역량강화(empowerment)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여성의 시민권 논의는 활성화되었다. 초기 여성의 시민권 보장에서 중심적인 질문은 여성의 완전한 시민권을 남성과 같은 것으로 다루느냐, 남성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다루느냐 하는 것이었다(이러한 문제는 경제적 독립, 양육의 책임과 관련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Ungerson(1997)은, 젠더화된 시민권에 대한 이슈는 부양책임의 불평등한 분리가 해결되고, 남성과 여성 시민 모두가 노동자로서 그리고 부양자로서 해석될 때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Lister(1997)는 시민권citizenship이

라는 용어가 갖는 성중립성gender neutrality이 성차에 대한 무관심gender-blindness과 성 편견gender-bias 모두를 가리고 있으며, 시민에 대한 지위는 여성을 배제하며 정의되었다고 본다. Lister는 여성이 단일한 집단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여성의 지위는 인종, 민족, 계급, 장애, 연령, 성적 편향이라는 다른 요인들에 의해 성립된다고 본다. 또한 기존의 시민권 논의는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졌고 사적인 영역에서 무엇이 발생하는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구분이 정치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다. Lister는 여성의 시민권이 이해되고 변화된다면, 공적-사적 구분은 정치적 이론을 구성하는 초점에서 사라지거나 새로운 경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권 논의들은 배경과 주장에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시민권의 점차적인 확장을 볼 수 있다. T.H.Marshall의 시민권, 경제적 시민권, 사회적 시민권에서는 시민권의 권리와 범위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T.H.Marshall의 시민권과 여성의 시민권에서는 배제되었던 계층에게로 시민권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시민권이 논의되고 있다.

참고 문헌

- Bernts et al. 1992. "Citizenship and Social Justice", *Social Justice Research* Vol 5, No 2.
- Handler, J.F. 2004. *Social Citizenship and Workfare in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ster, Ruth. 1997. "Tracing the Contours of Women's Citizenship" in Ungerson Clare(eds.). 1997. *Women and Social Policy: A Reader*. 2nd Edition. Macmillan.
- Marshall.T.H. 1964. "Citizenship and Social Class" in *Class, Citizenship, and Social Development: Essays by T.H.Marshall*. Chap IV.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65-122.
- Offe,Claus. 1997. "Towards a New Equilibrium of Citizen' Rights and Economic Resources?" in *Societal Cohesion and the Globalising Economy: What Does the Future Hold?*, Paris: OECD, 81-108.
- Sainsbury, Diane. 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ngerson Clare.1997. *Women and Social Policy: A Reader*. 2nd Edition. Macmillan.